

2016년 행복한아파트 공동체사업 협약서

서울특별시 SH공사(이하 "SH"라 한다)와 한겨레신문사(이하 "한겨레"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행복한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주민참여형 행복한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 이라한다)을 진행함에 있어 상호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체성 복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공동의 협력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내용)

본 협약서에서 합의하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주민참여형 행복한 주거공동체 만들기
『찾아가는 아파트 공공학교』
2. 대 상 : SH공사 공동주택단지(임대단지) 중 의제별 적합한 단지 시범 선정
3. 사업기간 : 2016. 07. 01 ~ 2017. 01. 31.

제3조 (업무분담)

"SH"와 "한겨레"는 SH공사가 권리 운영하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SH"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부담(비용은 "SH"와 "한겨레"가 합의하여 정한다)
 - 나. 공동사업 프로그램 운영 관리
2. "한겨레"는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입주민들이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가. SH공동주택단지 유희공간 활용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공간디자인 워크숍
 - 나. SH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안정화 및 활성화교육

- 다. SH공동주택단지 동대표 공공성 함양 교육
- 라. SH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역량강화 교육
- 마. 홍보 - 〈한겨레〉 취재보도

제4조 (변경협약)

기타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SH"와 "한겨레"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 (분쟁해결)

1. 본 협약사항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거나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례 법규, 예규, 관례에 따른다.
2. 본 협약과 관련된 민사재판의 합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6조 (정보이용)

협력기관이 상호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상대방의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 공개하기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6년 7월 14일

SH 서울특별시
에스에이리공사

시장 변 창 흡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정 영 무

주재영(변경) 영 흡 인

전무 송우관